

# 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사항	결산	변동성	법개정
1	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)	-	-	○
2	미래에셋스마트알파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1), 2), 3)	-	-	○
3	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4	미래에셋 Eastern 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5	미래에셋 FINEMMF1 호(국공채)	-	○	-	-
6	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-재간접형)	-	○	-	-
7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)	-	○	○	-
8	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)	-	○	-	-
9	미래에셋글로벌투자적격채권증권투자신탁(H)(채권)	-	○	-	-
10	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11	미래에셋미국인덱스 EMP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○	-	-
12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16 호	-	○	-	-
13	미래에셋변액보험베트남증권투자신탁(H-USD)(주식-파생형)	-	○	-	-
14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15	미래에셋영리한글로벌채권증권투자신탁(채권)	-	○	-	-
16	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(분배형)	-	○	○	-
17	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-	○	-	-
18	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19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40 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○	○	-
20	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21	미래에셋친디아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22	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-	-
23	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	-
24	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 4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○	-	-

## 2. 변경 사항:

- 1)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- 2) 투자신탁 명칭 변경
- 3)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문구 수정
- 4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- 6) 자본시장법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## 3. 효력발생예정일: 2021년 7월 15일 (목)

4. 변경 내용:

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
- 미래에셋스마트알파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
미래에셋스마트알파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투자신탁 명칭>	미래에셋 <u>스마트알파</u> 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미래에셋 <u>단기채알파</u> 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

2) 투자신탁 명칭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투자신탁 명칭>	미래에셋 <u>소비성장</u>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미래에셋 <u>코리아그레이트컨슈머</u>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투자신탁 명칭>	미래에셋 <u>스마트알파</u>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미래에셋 <u>단기채알파</u>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
3)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문구 수정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	②국공채, 통안채 등의 국내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며,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으로 주식에도 일부 투자합니다.	②국공채, 통안채 등의 <b>잔존 만기가 1 년 내외인 단기</b> 국내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며,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으로 주식에도 일부 투자합니다.

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7.85	19.49
미래에셋 Eastern 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6.71	17.35
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)	5	5	3.26	3.48
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<b>2</b>	<b>1</b>	<b>24.27</b>	<b>25.7</b>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1	1	28.2	30.09
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(분배형)	4	4	7.34	7.42
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21.51	22.65
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40 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2	2	16.51	16.93
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9.04	21.32

미래에셋친디아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5.87	17.76
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20.52	21.69

6) 자본시장법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</u> 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2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 <u>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  ②~③<생략> ④<신설>	①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 ②~③<생략> ④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